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호진 의원(찬성자 : 10명)

나. 의안번호 : 제 3682 호

다. 발의일자 : 2026. 5. 26.

라. 회부일자 : 2026. 5. 27.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6. 5. 30.~ 6. 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¹⁾됨에 따라 임산부의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²⁾ 이용 편의를 지원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표 1]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생략)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3. ----- ----- ----- ----- ----- 발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09호, 2024. 5. 20., 제정]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 주요골자 검토의견

- 안 제5조의2제3항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³⁾에 따른 임산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 현행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⁴⁾에서 임산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입장료·사용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 현재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음.
- 다만, 본 개정안의 조문 구성 및 감면 적용 방식 등의 규정 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와 미비점이 발견되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임.
- 먼저,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5조의2제3항제3호를 개정하려는 것이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나 현행 조례상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문구가 포함된 조항은 제3호가 아닌 제4호이고,

- 현행 제5조의2제3항제3호는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 대상 조항을 제5조의2제3항제4호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표 2] 참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5. - 6. (생략)

④ - ⑥ (생략)

-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 본문만을 수정하고 실제 구체적인 감면율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 [별표 3](사용료 감면 범위)의 내용(붙임 참조)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행 조례 제5조의2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문 개정만으로는 현장에서 임산부에게 적용할 감면율이 부재하여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현행 조례 [별표 3]의 다른 감면대상자(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등)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

록증, 다둥이 행복카드 등 공식적으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만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 본 개정안은 임신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빙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현장 확인이 불가한 상황임.
- 따라서 조례의 개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제9조⁵⁾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임신부 앱카드⁶⁾ 등 공식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명시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음.

- 즉, 본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정 대상 조항 번호의 오류 정정과 [별표 3]의 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 항목에 ‘임산부’ 및 ‘임산부 탑승 차량’을 각각 추가 신설하고 공식 증빙 제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타 유사 대상(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감면율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표 2] 참조).

[표 2] 안 제5조의2제3항 및 [별표 3] 수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생략)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5) 「모자보건법」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6) 서울온(ON)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통합 모바일 앱으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하나로 합쳐 전자증명서 발급, 모바일카드, 공공시설 이용 등을 한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다둥이행복카드·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급 ▲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 ▲공인증개사 자격·증개사무소 등록 확인 ▲서울시 디지털 증서(임명장·표창장 등) 관리 ▲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이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 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 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 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 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 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행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 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 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 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 시 간 초 과 시 부 터 부 과되 는 차 요인 경우 50)

※ 비교: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 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 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 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 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 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행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 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엽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시한 차량	50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 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 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 시 간 초 과 시 부 터 부 과되 는 차 요인 경우 50)

※ 비교: (개정안과 같음)

○ 한편,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조례 개정에 따라 편
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시설 이용 현황 중 임산부를 별도로 분류한 기초
통계가 부재하고,

- 정책 시행 이후 임산부 입장객 유입 규모와 이용 빈도 등 구체적인 수요 변화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 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 임산부 본인에 대한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물재생시설 내 이들 시설의 주 이용객이 주로 주변지역 주민들인 점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제336회 정례회에 본 개정안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총 7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음.

[표] 제336회 정례회에 유사 내용으로 발의(이효진 의원)된 일부개정조례안 현황

조 례 명	안건 번호	발의 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69	2026.5.26.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70	2026.5.26.	주택공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71	2026.5.26.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72	2026.5.26.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73	2026.5.26.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74	2026.5.26.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75	2026.5.26.	환경수자원위원회

[붙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3〕

[붙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별표 3] <개정 2025. 9. 29.>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